

대법원 2003. 4. 25 선고 2001다17107 판결 [보증채무금]

참 조 조 문

[1] 구 섭외사법 (2001. 4. 7.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,
제11조, 민법 제534조, 국제연합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 제19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3. 4. 25 선고 2001다17107 판결

부산고등법원 2001. 2. 2 선고 99나5033 판결

전 문

【원고,상고인】 에이치 알버트 지엠비에이치(H. Albert GmbH)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A
담당변호사 유BA 외 5인)

【피고,피상고인】 사카린 쉽핑 씨오(Sakhalin shipping Co.)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C 담당변호사
유BB 외 3인)

【원심판결】 부산고법 200 1. 2. 2. 선고 99나5033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은,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독일 브레멘 소재 독일 법인인 원고와 러시아 사할린 소재 법인인 소외 사DA모레프로닥트사(Sakhmoreproduct Co. Inc., 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, 구 섭외사법(2001. 4. 7.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9조, 제11조 제2항 및 민법 제534조, 1980년 국제연합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(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1980) 제19조 제1항,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의 1995. 6. 5.자 전문을 청약으로 보아 그 준거법을 러시아법으로 판단하고, 나아가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보증계약에 대하여는 독립적인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, 그 준거법 역시 러시아법으로 판단하였는바, 원심의 위와 같은 준거법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계약에 있어 준거법 결정에 대한 법리오해 혹은 청약과 승낙 과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나아가 원심은 원,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러시아법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원고가 1년 내에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러시아법의 각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독일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,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계약의 준거법 결정 및 러시아법상 소멸시효 및 그 중단에 대한 외국법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.

또한, 위와 같은 러시아법상의 보증인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러시아법의 규정이 구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변재승(재판장) 윤재식 강신욱(주심) 고현철